

교무운영관리위원회 운영 규정

2022. 05. 01. 최초제정

제1조(목적) 본 규정은 대학 교무·학사관리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미래 교육 제공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교무운영관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설치하고 목적 달성을 위해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위원 위촉 및 구성) 위원회의 위원은 총장이 위촉하며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.

제3조(위원의 임기)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제4조(위원장 및 간사) 위원장은 학사관리와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주무부서의 부서장이 하고 행정 지원 등을 위해 간사를 둘 수 있다.

제5조(위원회의 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자문 또는 의견을 개진하거나 정책을 수립할 수 있으며 제6호에 관하여는 그 내용을 심의한다.

1. 학사운영과 관리를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(수업관리, 출결관리, 성적관리 등)
2. 교육과정 도입 및 개발 정책에 관한 사항
3. 교육과정의 평가 및 질 관리 정책에 관한 사항
4. 교육과정 운영 성과 평가 및 환류에 관한 사항
5. 현장실습(캡스톤디자인 포함) 관리에 관한 사항
6. 학점인정에 관한 사항
7. 기타 위원회에서 대학의 교무 운영과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

제6조(회의) ①위원장은 제5조 각 호에 따른 안건에 대한 자문과 정책수립 등이 필요한 경우 회의를 소집한다.

②회의는 제적위원 과반수이상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심의·의결한다.

제7조(준용)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대학에 제정된 각종 규정에 따른다.

부 칙

- ①(시행일) 이 규정은 202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